



제438회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양별규정의 적용 대상에 공공기관 포함 〉

■ 김성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265호)

2026. 8.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곽 현 준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김성원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2026. 4. 13.
3. 회 부 일: 2026. 4. 1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반행위를 한 행위자 외에 그를 고용한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 등) 소속의 행위자가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사안에서, 해당 기관이 현행법상 양벌규정의 적용 대상인 ‘법인 또는 개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당 기관은 물론 행위자조차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대법원 2026. 3. 13. 선고 2025도10321 판결 등)한 바 있음.

이러한 입법적 공백으로 인하여 방대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공공기관 소속 종사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처벌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

으며, 민간 법인과의 형평성 문제 및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관리·감독 책임 약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양벌규정의 적용 대상에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을 명시적으로 포함함으로써 공공영역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고 법 적용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아울러 제70조 위반행위에 관한 제74조제1항의 양벌규정에 대하여도 동일한 이유로 공공기관을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조항 간 균형을 도모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장(長)도 행위자로서 양벌규정에 명확히 포섭될 수 있도록 법인의 대표자에 상응하여 공공기관의 장을 행위자 열거에 명시적으로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74조).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양벌규정의 적용 대상에 공공기관을 포함하고, 법인의 대표자에 상응하여 공공기관의 장을 행위자에 명시적으로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74조).

현행	개정안
제74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u>대표자</u> 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u>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u> 에 관하여 제70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u>법인 또는 개인</u> 을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u>법인 또는 개인</u> 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4조(양벌규정) ① ----- <u>대표자</u> , 공공기관의 장, 법인, 공공기관 ----- <u>법인 공공기관 또는 개인의 업무</u> -----
② 법인의 <u>대표자나 법인</u>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u>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u> 에 관하여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u>법인 또는 개인에게도</u>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	----- <u>법인, 공공기관 또는 개인</u> 을 -----. ----- <u>법인 공공기관</u> -----
	② ----- <u>대표자, 공공기관의 장, 법인 공공기관</u> ----- - <u>법인, 공공기관 또는 개인의 업무</u> ----- ----- <u>법인 공공기관 또는 개인에게도</u> ----- ----. ----- <u>법인, 공공기관</u> -----

현행	개정안
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현행법 제74조¹⁾는 양벌규정으로,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²⁾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1) 「개인정보 보호법」

제74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0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변경하거나 말소하여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의 중단·마비 등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자와 이를 교사·알선한 자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2. 제18조제1항·제2항, 제27조제3항 또는 제28조의2(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조 또는 제26조제5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3. 제22조의2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자
4. 제23조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민감정보를 처리한 자
5. 제24조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한 자
6. 제28조의3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처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임직원, 대리인 등의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해당 행위자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처리자도 처벌함으로써 임직원, 대리인 등의 업무 처리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

□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
-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하고 가명정보를 결합한 자
7. 제28조의3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결합을 수행한 기관 외부로 결합된 정보를 반출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결합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
 8. 제28조의5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한 자
 9. 제59조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10. 제59조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한 자
- 제7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제5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
 2. 제59조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3. 제60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용한 자
- 제7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6조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계속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2. 제37조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처리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3. 국내외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제39조의4에 따른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
 4. 제63조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법 위반사항을 은폐 또는 축소할 목적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5. 제63조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출입·검사 시 자료의 은닉·폐기, 접근 거부 또는 위조·변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② 제1항제3호의 죄는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관 등) 소속의 행위자가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사안에서, 해당 기관이 현행법상 양벌규정의 적용 대상인 ‘법인 또는 개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당 기관을 처벌할 수 없고, 행위자 또한 양벌규정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한 바 있음.³⁾

○ 이로 인해 방대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공공기관 소속 종사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의 사각지대 발생, 민간 법인과 의 형평성 문제 및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관리·감독 책임 약화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양벌규정의 적용 대상에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법인의 대표자에 상응하여 공공기관의 장을 행위자에 명시적으로 추가하려는 것으로, 공공영역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고 법 적용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개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첫째,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집행기관 등 법

3)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도10321 판결

(상략) 구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2조 제5호, 제6호에서 공공기관 중 법인격 없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 등을 개인정보처리자 중 하나로 규정하면서도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되는 개인정보처리자로는 같은 법 제74조 제2항에서 ‘법인 또는 개인’만 규정하였을 뿐이고,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위 양벌규정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을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없고, 그 경우 행위자 역시 위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도1942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경기도의 직속기관에 불과하여 법인격이 없는 ○○소방서는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4조 제2항의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그 행위자 역시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

인격 없는 공공기관에 대해서 양벌규정으로 형사처벌하려는 취지이나, 형벌권 행사의 주체인 국가가 스스로 자신의 하부기관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형벌권 행사의 주체와 대상이 동일해지는 결과가 발생함.

○ 따라서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에 대한 형벌 부과보다는 실제 행위자인 개인을 처벌하거나 「국가배상법」을 통한 금전적 배상, 또는 행정적 감사와 내부 징계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향이 현실적으로 타당할 수 있음.

□ 둘째, 2023년 3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공공기관에 소속된 임직원이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처벌할 수 있게 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⁴⁾

○ 개정안의 발의 배경이 되었던 사건은 해당 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었고 양벌규정으로도 이를 처벌할 수 없었던 사례였으나, 법 개정으로 해당 행위자를 직접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음.

□ 한편, 개정안에 대하여 법제처는 법인격 유무는 형사책임의 본질적 결정 요인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양벌규정의 적용대상에 중앙행

4) 「개인정보 보호법」[시행 2023. 9. 15.] [법률 제19234호, 2023. 3. 14., 일부개정]

제59조(금지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 제59조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한 자

정기관 및 그 기관의 장을 포함한 입법⁵⁾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공기관을 양벌규정의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여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에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국가 자신에 대한 형벌 부과 및 예산 집행이라는 측면에서 실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반면 개정안은 공공영역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등 보호법익의 차이가 있어 동일하게 입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벌금 부과보다는 공공기관 및 그 기관의 장을 과징금 부과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등 다른 제재방법을 검토할 수도 있는바, 공공기관에

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법 위반 시 처벌대상인 '경영책임자등'의 범위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포함시키고 있고,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처벌하는 외에 그 기관에도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경영책임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②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조(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조제1항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

2. 제6조제2항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

대한 벌금 부과 여부는 위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아울러, 개정안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⁶⁾의 범위가 대통령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할 소지가 있으므로 법률에 직접 규정하거나 위임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고,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은 조직형태가 다양하여 의사결정구조가 단일하지 않으므로 양벌규정상 면책요건인 ‘상당한 주의와 감독’의 의무주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 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에 양벌규정을 확대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에 대한 형벌 부과 여부 등 형사법 체계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고,

공공기관 임직원의 사적 목적 이용에 대한 처벌규정 미비 문제는 2023년 법이 개정되어 입법적으로 해소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108

6)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나. 그 밖의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